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757
----------	------

제출년월일 : 2008 . 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출산을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및 인구 노령화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출산 사회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학자금 신설 등 다자녀 기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산시 출산 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조건 완화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거주 조건을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하여 타시군 지자체와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기도 개선 권장안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을 ‘거주하는’ 으로 수정하였으며,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입양자녀를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명시함……(안 제4조).

나. 출산장려금 신청기간 연장

경기도 개선 권장안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장려금 신청기간을 ‘3개월이내’ 에서 ‘1년이내’ 로 연장을 명시함……(안 제6조).

다. 양육비 지급대상 범위 구체화

가족구성 범위에 한부모 및 재혼가정을 포함시키고 출생아의 시관내 거주를 구체화 하고, 경기도 개선 권장안을 적극 반영하여 입양아 자녀를 양육비 지원 대상자에 포함……(안 제8조).

라. 다자녀 학자금 내용 신설

넷째자녀 이상 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지원하고, 다섯째자녀 이상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1인에 한하여 지원함. ……(안 제4장).

마. 학자금 지원 중지 구체화

학자금 지원 중지를 부모와 함께 자녀가 관외로 주민등록상 이주한 경우로 명시 함……(안 제12조).

바. 중복지원 금지

양육비 및 입양아동수당에 대하여 중복 지원 금지를 명시함……(안 제17조).

전부개정조례안 : 별첨

관련사업계획서 : 별첨

예산수반사항

사 업 명	예상인원	사업비(추가)	비 고
다자녀학자금	225명	348,000천원	신규
출산장려금	858명	92,800천원	
양육비	1,400명	371,360천원	

사전예고결과 : 별첨(의견있음:미반영)

○ 입법예고기간 : 2008.10. 1. -10. 21.(20일간)

기타자료

○ 경기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권장안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구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은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비 및 다자녀 학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이란 임신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2. “영유아 양육비” (이하 “양육비” 이라 한다)란 5세 이하인 셋째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3. “다자녀 학자금” (이하 “학자금” 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대학교)의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

제2장 출산장려금

제4조(장려금) 장려금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된 자에게 지원한다.

제5조(장려금 지원금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원 이하로 한다.

제6조(장려금 신청) ① 시장은 출생 신고 시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자일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7조(장려금 지원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금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영유아 양육비

제8조(양육비) ① 양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한부모 가정을 포함)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셋 이상의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재혼한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② 양육비 지원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까지로 한다.

제9조(양육비 지원금액)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1인당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제10조(양육비 신청) 양육비의 지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11조(양육비 지원방법) ① 시장은 양육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및 지원 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다자녀 학자금

제12조(학자금) ① 학자금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5년 이상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자녀의 수가 입양아로 인하여 다섯 이상인 경우 대학 학자금 지원은 입양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할 수 있다.

1. 넷째 이상인 자녀로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 후(검정고시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다섯째 이상인 자녀로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 후(검정고시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세대당 1인에 한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부모와 지원대상자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이 호에서 거주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학자금 지원금액) ① 학자금은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금액의 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하되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고 및 신청) ① 시장은 매년 학자금의 지급규모,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학자금 지급 계획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 증명서 및 납입증명서
2. 예금통장 사본

③ 학자금을 지원받는 자가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예상기간 등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학자금 지원방법) ① 시장은 학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 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환수 등) 시장은 장려금,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지급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등이 정책적으로 장려금, 양육비(입양수당을 포함한다),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등의 지원금액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한다.

제18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관련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가족여성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담당·팀장 직위·성명	여성정책담당 시성명
	담당자 성명·전화	구본석 (행정 2267)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자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57
----------	------

제안년월일 : 2008. 11. 13.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적극적인 출산과 다자녀 장려 시책을 추진코자 입양아의 거주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고, 일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함.

2. 주요골자

- 입양아의 거주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수정함.(안 제12조)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입양아인 경우 3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 증명서
2. 납입증명서
3. 예금통장 사본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12조(학자금) ①학자금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5년 이상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자녀의 수가 입양으로 인하여 다섯 이상인 경우 대학 학자금 지원은 입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할 수 있다.</p> <p>1. <u>넷째 이상인 자녀로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 후 (검정고시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가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u></p> <p>2. <u>다섯째 이상인 자녀로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검정고시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세대당 1인에 한함)</u></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제12조(학자금) ①.....</p> <p>.....</p> <p>..... 단 입양이인 경우 3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p> <p>1.</p> <p>.....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p> <p>.....</p> <p>2.</p> <p>.....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p> <p>.....</p> <p>② (원안과 같음)</p> <p>1. ~ 3. (원안과 같음)</p>
<p>제14조(공고 및 신청) ① (생략)</p> <p>② <u>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1. <u>합격통지서 또는 재학 증명서 및 납입증명서</u></p> <p>2. <u>예금통장 사본</u></p> <p>③ (생략)</p>	<p>제14조(공고 및 신청) ① (원안과 같음)</p> <p>② <u>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1. <u>합격통지서 또는 재학 증명서</u></p> <p>2. <u>납입증명서</u></p> <p>3. <u>예금통장 사본</u></p> <p>③ (원안과 같음)</p>